

## 청주교육대학교 내리사랑장학금 시행세칙

제정 2010. 12. 30. 규칙 제1262호  
1차 개정 2013. 11. 21. 규칙 제1326호  
2차 개정 2019. 11. 21. 규칙 제1504호

제1조 (목적) 본 시행세칙은 내리사랑장학금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재원) ① 내리사랑장학금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.

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졸업 후에 다시 기부하도록 하여 장학금을 유치한다.

제3조 (지급 범위) ① 장학금 지급액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재학 중 총 2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.

② 수혜인원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4조 (신청방법)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내리사랑장학금 신청서[서식 1] 1부
2. 내리사랑장학금 기부약정서[서식 2] 1부
3.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4.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제5조 (선발방법) ①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. 다만, 장학금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직전학기 성적,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.

② 장학금 기부자는 특정인을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는 없으나 학과, 학년, 학생유형 등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 (지급방법)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은 재단법인 청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을 통하여 장학금과 증서[서식 3]를 수여한다.(개정 2019.11.21.)

제7조 (수혜자 의무) 장학금 수혜 학생은 교원 임용 또는 취업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학 중에 약정한 장학금을 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입대자는 군복무 기간 동안 기

부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1회 수혜자는 임용 또는 취업 후 1년 이내 일시불 기부
2. 2회 수혜자는 임용 또는 취업 후 2년 이내 일시불 또는 분할 기부

제8조 (장학금 계보 관리)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5년 이내에 약정한 금액을 기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내리사랑장학금이 이어지도록 관리한다.

부 칙(2010. 12. 30. 규칙 제1262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1. 21. 규칙 제1326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1. 21. 규칙 제1504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[서식 3]

제 20 - 호

# 내리사랑 장학증서

(최초 기탁자 : ○○○○)

청주교육대학교

○○교육과 ○학년 ○○○

위 학생은 20○○학년도 제○학기 청주  
교육대학교 내리사랑 장학생으로 선정  
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(내리사랑 릴레이 기탁자 : ○○○○ - ○○○○)

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청주교육대학교총장 ○○○○